

제233회 임시회  
광진구의회

#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

2020. 4. 24.

**복지건설위원회**

#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제 1640호
----------	---------

2020.4.24.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20. 4. 9.
- 나. 회부일자 : 2020. 4. 20.
- 다. 상정일자 : 2020. 4. 23.

## 2. 제안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이도우 교통건설국장

### 나. 개정이유

개정된 상위법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### 다. 주요내용

1. 목적의 약칭 문구 삭제(안 제1조)
2.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정비·보완(안 제4조)
  -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조항 신설
3. 상위법령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5년마다 수립 의무 규정 신설(안 제5조)
4. 상위법령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정비·보완(안 제7조)
  -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별표 1 신설

5. 상위법령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·운영(안 제17조)
6. 그 밖의 조문 정비

## 라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,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2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
3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4. 기 타
  - 1) 입법예고(2020. 3. 3. ~ 3. 23.) 결과 : 의견 없음
  - 2)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,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윤선영)

- 의안번호 제1640호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2020년 4월 9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4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·회부된 안건임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체계화하여, 우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음
-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### 가.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조항 신설(안 제4조제2항)

-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0조제1항을 반영한 것임

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**제20조(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)** ① 누구든지 도로, 자전거 주차장,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.

나.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
-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,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음
- 본 조례는 위임조례 성격으로써, 상위법상 “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”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임

▷ (현행)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 ⇒ (개정)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

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**제5조(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)**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·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(이하 "활성화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-----

1.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
2. 연도별 활성화계획
3.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다.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정비·보완(안 제7조)

- 현행 조례상 구청장은 공원, 하천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

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하도록 되어있음

- 안 제7조제2항에서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제7조에 맞춰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여 별표 1로 신설하였음

▷ (현행) 노외주차장 총면적 기준 ⇒ (개정)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

###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**제11조(자전거 주차장의 설치·운영)**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주차장법」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「주차장법」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「주차장법」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「주택법」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. 19.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**제7조(자전거 주차장의 설치)** ① 법 제11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29>

② 삭제 <2017. 12. 29>

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4. 4. 28.]

## 라. 자전거의 날 지정·운영(안 제17조)

- 구청장은 매년 4월 22일을 “자전거의 날” 로 지정·운영하도록 하고, 자전거의 날과 그 주간에 관련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함. 이는 법 제4조2 및 영 제2조3을 반영한 것임
-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역할을 법에 맞춰 구체화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

▷ (현행) 자전거이용의 날 ⇒ (개정) 자전거의 날

###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**제4조의2(자전거의 날 지정·운영)**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**자전거의 날**을 지정·운영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자전거의 날 지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 
[전문개정 2014. 1. 28.]

###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**제2조의3(자전거의 날 지정·운영)**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0. 6. 29.] [제2조의2에서 이동 <2014. 4. 28.>]

## 마. 기타 정비 사항

- 안 제1조의 목적 조문의 약칭 삭제, 안 제7조제2항의 별표 1 신설에 따른 안 제9조의 별표 변경 등 규정 범위에 맞게 기타 사항을 정비함

## 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심각한 교통·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부응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된 것임
-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잘 반영하여 관련 조문들을 변경하고,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됨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회의록 참조

## 5. 토론

- 회의록 참조

## 6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

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